정책·동향

2007년 프랑스 가족 수당 정책의 개관 (Vos Prestations 2007)[1]

신 윤 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1. 서 론

프랑스는 사회보장제도가 가장 잘 확립되어 있는 국가 중 하나이다. 사회보장제도는 수평적 재분배를 통하여 평등한 사회실현을 목표로 하는 제도적 장치이며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다. 국민들은 일단 연금공단에 가입해 일정한 분담금을 내고, 연금가입자들은 공단으로부터 수당을 지급받아 혜택을 받는 식으로 되어 있다.

프랑스의 연금공단은 몇 가지로 나뉘어 있으며 그 대상자도 각각 달리하고 있다. 가입자가 받을 수 있는 보장성 혜택은 의료수당, 가족수당, 출산수당, 주택수당, 실업수당 등 그 종류가 다양하고 지급방식도 매우 복잡하다. 이들은 소득에 무관하게 프랑스 국민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것과 가난한 사람들만 받을 수 있는 것으로 구분된다.

프랑스의 '가족수당금고(Caf: Caisse d' Allocations familiales)'가 지급하고 있는 '가족수당'은 프랑스 국민들뿐만 아니라 외국인들도 일정한 조건, 즉 프랑스에서 합법적으로 지속적인 체류를 한다면 국적이 어딘가에 상관없이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가족수당금고'가 지급하는 '가족수당'은 자녀양육과 가족생활이 어려움 없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당과 함께, 경우에 따라 보조금도 지급되는 방식으로 되어 있다. '가족수당'은 자녀의 양육에 관련된 수당이 대부분이다.

자녀양육을 위해 지급되는 수당은 아이의 출생 이전인 임신부터 시작되어 출산, 보육, 취학에 대한 수당이 지급되는데 자녀는 친자녀뿐만 아니라 입양자녀(입양수당) 등 반드시 혈연관계가 아니어도, 또한 형제자매나 조카일 수도 있는, 다만 피부양자의 조건을 충족시키면 된다는 매우 유연한 개념을 보여주고 있다.

보육수당에 있어서는 아이 양육을 위해 부모가 취업활동을 중지하거나 일을 계속하면서 보육을 제3자에게 맡기는 경우 지급되는 '직업 활동에 대한 자유선택 보조금'과 '보육방식에 대한 자유선택 보조금', 장애자 아이를 키우고 보살피기 위해 지급되는 '아이 곁에 있어야 하는 부모의 매일수당' 등이 있다. 또한 교육과 취학수당으로 16세까지 의무교육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프랑스에서는 학비가 들지 않는 대신 자녀들의 개학 시에 부모들이 지출하는 비용을 부담해주기 위한 개학수당, 장애아의 교육과 치료에 드는 비용을 보조해주는 '장애아 교육수당' 등 자녀양육과 교육을 위해 국가에서 지급하는 다양한 수당과 보조금, 자녀를 두고 있는 부모의 세제혜택 등이 있다.

이러한 수당은 아이가 한 명이면 신청서를 내고 일일이 수속을 해야 하지만 둘째 아이부터는 출생이나 입양신고만 하면 자동적으로 지급되고 세 명이상일 경우는 그 액수나 종류에 있어서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혜택은 그 조건과 종류가 매우 세밀하고 심도 있게 분류되어 있다. 임신부터 출산이나 입양, 양육, 교육까지 부모들이 경제적인 근심 없이 애들을 낳고 키우는데 국가가 전폭적으로 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제도적인 뒷받침은 프랑스가 과거 한동안 세계적인 저 출산 국가였던 경험에서 나온 진지한 고민과 연구의 결과로 이루어진 것이라 생각되며 이러한 정책의 추진으로 프랑스는 현재 저 출산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해 나가고 있다. 이외에도 재원이 적은 가정의 주택보조금(이사특별수당, 주거개선을 위한 대출, 학생수당), 성인장애자 수당, 편부모 수당, 사회적응을 위한 최소수당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세심한 배려를 보여주는 다양한 수당 내용이 '가족수당'에 포함되어 있다.

2. 프랑스 가족 수당의 지급 대상

프랑스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은 본인 및 본인이 부양하는 자녀가 지속적으로 프랑스에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한, 국적이 어디든 상관없이 자녀 양육 수당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소득조사 수당의 경우, 올해 회계연도의 수당액은 전년도의 소득에 기초하여 책정된다. 즉, 2006년 7월 1일부터 2007년 6월 30일 사이의 수당은 2005년도에 취득한 소득 신고에 기초하여 책정된다. 별거, 이혼 혹은 배우자 사망의 경우, 사건이 일어난 다음날부터 예전 배우자의 소득을 고려하지 않는다.

자녀가 피부양자로 인정되면 자녀 양육 수당을 지급받을 권리를 갖게 된다. 자녀가 피부양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재정적으로 자녀의 부양(의식주)을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방식으로 보장해야 하고 자녀에 대해 애정을 갖고 교육적인 책임을 인수해야 한다. 자녀가 피부양자로 인정받기 위해서 본인과 자녀 사이에 반드시 혈연관계가 필수적인 것은 아니다. 친생자, 사생아, 입양아, 입양이 아니면서 거두어들인 아이, 형제자매, 조카도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 피부양자는 반드시 프랑스 본국에 영구적으로 거주해야만 하고,

1) 본 고는 프랑스의 가족수당금고(Caf: Caisse d' Allocations familiales)가 발간한 "2007년 당신의 수당(Vos prestations 2007)"을 기초로 자녀 양육과 관련된 프랑스 가족 수당 정책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였음.

표 1. 프랑스 가족 수당 정책의 개관

자녀수	수당 종류	자녀연령	소득조사수당	보편적수당
첫째아	출생 · 입양 특별수당 (La prime à la naissance ou à l'adoption)	0~3세	○	
	기초수당 (L'allocation de base)		○	
	직업활동에 대한 자유선택 보조금 (Le complément de libre choix d'activité/ Le complément optionnel de libre choix d'activité)			○
	보육방식에 대한 자유선택 보조금 (Le complément de libre choix du mode de garde)	0~6세		○
	인가된 보육담당 사회복지사 고용을 위한 가정 보조금 (L'aide à la famille pour l'emploi d'une assistante maternelle agréée)	3~6세		○
	가정내 보육수당 (L'allocation de garde d'enfant à domicile)			○
	가족지원수당 (L'allocation de soutien familial)	0~20세		○
	장애아 교육수당 (L'allocation d'éducation de l'enfant handicapé)			○
	아이 곁에 있어야 하는 부모를 위한 매일 수당 (L'allocation journalière de présence parentale)			○
	개학수당 (L'allocation de rentrée scolaire)	6~18세	○	
둘째아	가족수당 (Les allocations familiales)	0~20세		○
셋째아 이상	가족보조금 (Le complément familial)	3~21세	○	

자료: 프랑스 가족수당금고(2007) "2007년 당신의 수당(Vos prestations 2007)"

유럽 연합이나 외국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규정에 저촉된다.

자녀 연령이 0세부터 6세까지는 다른 어떤 조건 없이도 본인이 자녀를 부양한다고 간주된다. 6세부터 16세까지는 아이가 취학의무를 채우는 경우, 16세부터 20세까지는 아이가 직업 활동 없는 학생 혹은 수습생(견습공)이거나 아이의 월급여가 최저임금의 55%(768.70유로)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된다. 만일 자녀가 위와 같은 조건을 충족시킨다면 가족보조금과 주택보조금에 대한 권리는 자녀의 21번째 생일까지 유지된다. 만일 자녀가 그 자신이 수당 수령자가 된다면, 예를 들어 사회적인 주택수당이나 개별화된 주택수당을 받는다면 자녀는 더 이상 피부양자로 간주되지 않는다.

남녀를 불문하고 홀로 살면서 한명 또는 여러 명의 부양 자녀가 있는 경우 가족지원수당 혹은 편부모수당을 받을 수 있다. 임신부에 대해서는 출생 · 입양 특별수당, 편부모수당, 사회적응을 위한 최소수당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007년 현재 2004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0~3세 자녀가 있는 경우와 입양한 아이가 있는 경우 "어린 아이 환대 수당"으로서 "출생 · 입양 특별수당," "기초수당," "직업 활동에 대한 자유선택 보조금," "보육방식에 대한 자유선택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한편 2007년 현재 2004년 1월 1일 이전에 태어난 3~6세 까지의 자녀를 둔 사람들은 이 날짜 이후에 다른 아이의 출생이나 입양이 없다면 "인가받은 보육담당 사회복지사 고용을 위한 가정 보조금," "가정내 보육수당"을 받을 수 있다.

3. 프랑스 가족 수당의 주요 내용

(1) 출생 · 입양 특별 수당(La prime à la naissance ou á l'adoption)

출생 · 입양 특별 수당은 아이의 출생이나 입양 시 초기 지출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정책이다. 수급 조건은 임신한 경우 임신 초기 14주 이내에 임신사실을 "가족수당금고"와 "제1차 의료보험 금고"에 신고하여야 하며, 입양인 경우 20세 이하의 아이를 한명 혹은 여러 명 입양하거나 입양할 예정으로 아이를 거두어 들여야 한다. 또한 2006년 7월 1일부터 2007년 6월 30일 사이에 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2005년도 소득이 자녀 수 및 가족 유형에 따른 상한선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새로 출생하는 자녀에 대해서는 임신기간 7개월 동안 855.25 유로를 받게 되며 다태아 임신의 경우 태어날 아이의 수만큼 이 액수를 받게 된다. 입양하거나 입양예정으로 맞아들이는 아이가 있는 경우에는 1710.49 유로를 받게 된다.

표 2. 프랑스의 자녀 양육 수당 수급 조건 소득 한도 (2005년 연소득)

가정 내 자녀 수 (출생했거나 출생예정)	한 명만 직업활동하는 커플의 소득	편부모나 양쪽 모두 직업활동을 하는 커플의 소득
1	25,430유로	33,606유로
2	30,516유로	38,692유로
3	36,619유로	44,795유로
한 명 추가 당	6,103유로	6,103유로

자료: 프랑스 가족수당금고(2007) "2007년 당신의 수당(Vos prestations 2007)"

(2) 기초수당(L' allocation de base)

기초 수당은 자녀를 위한 교육 관련 지출을 보장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이다. 수급 조건은 2007년 현재 자녀가 2004년 1월 1일 이후 출생하거나 입양된 경우이어야 하며 출생의 경우에는 3세 미만이어야 하고 입양의 경우에는 20세 미만이어야 한다. 또한 2005년 소득이 자녀 양육수당 수급 조건 소득 한도를 넘지 않아야 한다. 기초 수당의 액수는 월 171.06유로이며 다태아를 출산한 경우 혹은 다수를 입양한 경우에는 출생한 혹은 입양한 아이 수만큼 지급된다. 기초수당은 아이가 출생한 달부터 세 번째 생일 한 달 전까지 지급된다. 입양의 경우 아이가 집에 온 달 혹은 입양된 달부터 연속적으로 36개월간 아이의 20번째 생일 한도 내에서 지급된다.

(3) 직업 활동에 대한 자유선택 보조금(Le complément de libre choix d' activité/ Le complément optionnel de libre choix d' activité)

아이를 기르기 위해 직업 활동을 중지하거나 노동시간이 감소된 경우 받을 수 있는 수당이다. 수급 조건으로 2007년 현재 2004년 1월 1일 이후에 출생하거나 입양된 3세 이하의 자녀가 적어도 한명은 있어야 한다. 아이를 돌보기 위해 일하는 것을 중지했거나 파트타임으로 일해야 한다. 첫째 아이만 있는 경우에는 최근 2년 이내에 적어도 24개월의 노후분담금을, 둘째 아이를 낳았다면 최근 4년 이내에, 셋째 아이 부터는 최근 5년 이내에 노후 분담금을 지불했다는 것을 증명하여야 한다.

직업 활동을 완전히 중지한 경우 매달 359.67유로를 받으며 이 때 기초 수당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매달 530.72유로를 받는다. 파트타임 근무를 하고 있거나 그 이하의 시간으로 근무할 때 매달 232.52유로를 지급받으며, 기초수당을 받지 않는다면 매달 403.56 유로를 받는다. 근무시간의 50~80%를 일하고 있는 경우에는 매달 134.13유로를 지급 받으며, 기초 수당을 받고 있지 않다면 매달 305.17 유로를 받는다. 수당의 지급 기간은 한 명의 피부양자 자녀가 있는 경우 출생일부터 혹은 모성이나 부성 육아 휴가, 입양 휴가 혹은 병가가 끝나는 날부터 최대 6개월간 지급된다. 두 명 이상의 피부양자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막내 아이의 세 번째 생일 전달까지 지급된다. 한편, 자녀 양육으로 인해 직장을 그만두었거나 2007년 현재 2006년 7월 1일 이후 출생 혹은 입양된 자녀 한명을 포함하여 최소 세 자녀를 두고 있는 경우 "직업 활동의 자유로운 선택에 대한 선택적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동 수당은 출생일이나 입양 일부터 최대 12개월 동안 지급될 수 있다. 모성 육아, 부성 육아, 질병 등에 대한 매일 보상금을 받는 경우 이 매일 보상금이 끝나는 달부터 아이의 출생이나 입양의 첫 돌 1개월 전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수당액수는 월 758.95유로 이며, 기초 수당을 받는 경우에는 월 587.90 유로를 받는다.

(4) 보육방식에 대한 자유선택 보조금(Le complément de libre choix du mode de garde)

6세 미만의 자녀를 인가받은 보육 시설에 맡기거나 가정에서 도우미에게 보육을 맡기는 경우 부모가 지급하는 보육료의 일부분을 가족수당금고가 지급한다. 3세 미만의 아이들을 위해서는 월 395 유로 한도 내에서, 3세부터 6세까지의 아이들을 위해서는 월 197유로의 한도 내에서, 인가 받은 보육 담당 사회복지사의 고용을 위해서는 100%, 가정 내 보육도우미 고용을 위해서는 50% 지급한다. 수급 조건으로 배우자가 없는 경우 월 소득액이 최소 374.12 유로가 되어야 하고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월 소득액이 최소 748.24 유로가 되어야 한다. 비급여자 혹은 파트타임 근무자인 경우에도 소득액수의 조건을 충족시켜야만 한다. 자녀를 위탁하는 보육시설은 "모성유아보호" 기구가 인가한 곳이어야 한다. 동 보육시설의 임금총액은 2007년 1월 1일 현재 하루에 그리고 보호하는 어린이 한 명당 41.35 유로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보육 담당 사회복지사 혹은 가정 내 보육 도우미를 고용하는 자격을 갖춘 단체가 기업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에 동 보조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녀는 적어도 한 달에 16시간 이상을 보육 받아야 한다. 보육인 고용 비용에 대해 가족수당금고가 부분적으로 부담하는 액수는 소득, 자녀수, 자녀

표 3. 프랑스의 보육방식에 대한 자유선택 보조금 소득 상한

피부양자 자녀	1종	2종	3종
1명	15,123유로 이하	15,123 ~33,606유로	33,606유로 이상
2명	17,411유로 이하	17,411~38,692유로	38,692유로 이상
3명	20,158유로 이하	20,158~44,795유로	44,795유로 이상

자료: 프랑스 가족수당금고(2007) "2007년 당신의 수당(Vos prestations 2007)"

표 4. 프랑스의 보육방식에 대한 자유선택 보조금 월간 최대 지급액 수

자녀의 연령	소득 상한	피고용인	보육담당 사회복지사의 고용 자격을 갖춘 단체나 기업	가정내 보육도우미를 고용하는 자격을 갖춘 단체나 기업
3세 미만	1종	374.75유로	642.40유로	776.25유로
	2종	267.69유로	535.33유로	669.16유로
	3종	160.60유로	428.28유로	562.10유로
3~6세까지	1종	187.39유로	321.20유로	388.13유로
	2종	133.86유로	267.67유로	334.58유로
	3종	80.30유로	214.15유로	281.05유로

자료: 프랑스 가족수당금고(2007) "2007년 당신의 수당(Vos prestations 2007)"

연령에 따라 좌우되며, 비용의 최소 15%를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5) 인가받은 보육담당사회복지사 고용을 위한 가족 보조금(L' aide à la famille pour l' emploi d' une assistante maternelle agréée)

동 보조금은 3~6세까지의 자녀에 대한 보육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이다. 수급조건으로 6세 미만의 자녀를 보육하기 위해 각 도의 "모성유아보호"기구가 인가한 독립적인 보육담당 사회복지사를 고용해야 한다. 하루에 그리고 어린이 한명 당 최저 임금의 5배가 넘지 않는 임금(41.35 유로)을 지불해야 한다.

가족수당금고는 보육 담당 사회복지사를 고용함으로써 지불해야 하는 비용을 분담해 준다. 이 보조금은 보육 담당 사회복지사가 수령한 3분기 순수입의 85%를 초과하지 않는다. 자녀가 6세가 되는 3분기의 마지막까지 보조금은 지급된다.

표 5. 프랑스의 인가받은 보육담당사회복지사 고용을 위한 가족 보조금

소득 상한	월 보조금
13,839유로 이하	109.34유로
13,839에서 19,029 유로까지	86.44유로
19,029유로 이상	71.63유로

주: 한자녀 가정에 대한 보조금이며 자녀수에 따라 월 보조금 액수는 다름
자료: 프랑스 가족수당금고(2007) "2007년 당신의 수당(Vos prestations 2007)"

(6) 가정 내 보육수당(L' allocation de garde d' enfant à domicile)

가정 내 보육 수당은 3~6세까지 자녀의 보육을 위해 집안에 피고용자를 고용하는 경우 비용을 보조해 주는 제도이다. 수급 조건으로 부모가 직장에서 일하는 동안 자택에서 3~6세 미만의 한 명 혹은 여러 명의 자녀를 돌보기 위해 보육도우미를 고용해야 한다. 커플로 살고 있는 경우 본인과 배우자는 최소한의 직업 활동을 해야 하는데 임금 노동자의 경우 각 개인은 3분기 순수소득이 적어도 1,122.36 유로가 되어야 한다. 본인 혹은 배우자가 자영업자인 경우, 노후보장보험기관의 가입자이어야 하고 보험금을 납입하는 중이어야 한다.

부모의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가정 내 보육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 액수는 만일 부분적 비율의 "부모가 지출한 자녀 교육비 수당"의 혜택을 받고 있다면 3분기 당 553 유로 한도 내에서 지불해야할 액수의 50%이다. 지급기간은 자녀의 여섯 번째 생일이 들어 있는 3분기의 마지막 날까지이다.

피고용인의 수와 보육하는 아이의 수에 상관없이 한 가정은 단 하나의 수당 권리만을 가질 수 있다. 가족수당기금은 가정 내 보육수당을 직접 Urssaf(프랑스 사회보장과 가족수당 분담금 징수 연합)에 지급하며, Urssaf는 부모가 지불해야 하는 분담금을 알려 준다.

(7) 가족지원수당(L' allocation de soutien familial)

가족지원수당은 부모 중 한 명 혹은 부모 모두가 없는 아이를 양육하기 위해 지급되는 수당이다. 수급 조건으로 적어도 한명의 자녀를 부양해야 하며, 본인이 부양하는 자녀의 아버지이거나 어머니이고 혼자서 아이와 함께 살거나, 혹은 본인이 이 아이를 입양 등으로 거두어들인 경우에는 배우자와 산다할지라도 가족지원수당을 받을 수 있다. 아이가 아버지 혹은 어머니를 잃었거나 한쪽 부모가 아이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 자동적으로 "가족지원수당"의 권리가 있다.

부모 중 한 편이 적어도 2개월을 계속해서 아이 부양에 더 이상 참여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은 조건 속에서 일시적으로 가족지원수당을 받을 권리가 있다. 부모 중 한쪽이 부양 의무를 이행할 능력이 없는 경우 그가 놓여 있는 상황이 본인에게 가족지원수당의 권리를 주는지 알아보기 위해서는 해당 가족수당금고에 연락을 취해야 한다. 한 쪽 부모가 부양 의무에서 벗어나는 경우 4개월간 가족지원수당이 지급된다. 4개월 이상 가족지원수당에 대한 권리를 유지시키려면 4개월 이내에 다음과 같은 행동을 개시해야 한다: ① 어떤 재판도 하지 않았다면 부양료를 정하기 위해 본인 거주지 대법원의 가사 담당 판사에게 의뢰 한다 ② 재판을 했는데도 부양료를 정하지 못했다면 같은 판사에게 판결을 재검토하게 하는 행동을 취한다. 한 쪽 부모가 재판에 의해 정해진 부양료를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지불하지 않는 경우 가족수당금고가 본인을 대신하여 부양료를 회수하기 위한 행동을 취한다. 이 경우 가족수당금고는 지불해야할 부양료의 선불금을 본인에게 지급한다.

가족지원수당액은 홀로 아이를 기를 경우 피부양자 아이 한명 당 83.76 유로, 부모의 도움을 상실한 아이를 거두어들인 경우에는 피부양자 아이 한 명당 111.68 유로이다. 배우자와 함께 사는 경우와 같이 선불금 명목으로 가족지원수당을 받을 권리가 없다면 다음과 같은 조건에서 가족수당금고는 지불되지 않은 부양료를 회수하는 것을 도와 줄 수 있다: ① 요구 당시 부양료가 한 명이나 여러 명의 아이를 위해 지불되는 조건에서, ② 부양료를 회수하기 위해 민사상의 행동을 개시하였으나 성공하지 못한 조건하에서 수당 수령자가 결혼, 재혼, 동거 혹은 공동생활을 하기 위해 체결된 계약(Pacs)을 한 경우 가족지원수당의 권리는 소멸된다.

(8) 장애아 교육수당(L' allocation d' éducation de l' enfant handicapé)

장애아 교육수당은 장애아인 자녀의 교육과 치료에 드는 비용을 보조해 주는 제도로서 특별교육수당을 대체한다. 수급조건으로 자녀의 연령이 20세 미만이어야 하며 영구적인 능력 상실이 적어도 80%이어야 한다. 자녀가 특수학교에 다니거나 자녀의 상태가 특별 교육이나 가택 치료 서비스를 받는 것이 강력히 요구되는 경우 자녀의 능력 상실은 50%~80% 사이가 될 수 있다.

또한 자녀가 의료보험제도나 국가 혹은 사회구제사업에서 전액 부담하는 기숙학교에 다니지 않아야 한다.

장애아 교육수당의 기초 액수는 월 119.72 유로인데 몇 가지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보조금에 의해 증액될 수 있다. 부모의 직업 활동(완전 혹은 부분적) 중지, 임금이 지급되는 제 3자의 고용, 자녀의 건강 상태로 인해 지출된 비용에 따라 다음 6개 형태로 분류된 보조금이 존재한다: ① 첫째 형태(89.79유로), ② 둘째 형태(243.18유로), ③ 셋째 형태(344.19유로), ④ 넷째 형태(533.38유로), ⑤ 다섯째 형태(681.68 유로), ⑥여섯째 형태(999.83 유로)

지자체의 장애인 권리와 자립위원회가 최소 1년 그리고 최대 5년간 갱신 가능한 기간을 정하고 어린이나 청소년의 건강상태를 평가하여 장애아 교육 수당 및 보조금을 결정한다. 자녀가 기숙학교에 있는 경우 자녀가 집에 돌아와 있는 일수에 따라 장애아 수당을 받을 수 있다.

(9) 아이 곁에 있어야 하는 부모의 매일 수당(L' allocation journalière de présence parentale)

아이가 곁에 있어야 하는 부모의 매일 수당은 심하게 아프거나 사고를 당했거나 혹은 장애자인 자녀를 돌보기 위해 지급될 수 있는 수당이다. 수급 조건으로 피부양자 자녀는 20세 미만이어야 하고 그 곁에 반드시 한 사람이 함께 있어야 하는 심각한 질병이나 장애 혹은 사고를 당한 경우이어야 한다. 봉급 생활자인 경우에는 "부모가 곁에 있어야 하는 휴가"의 일환으로 자녀를 돌보기 위해 직업 활용을 중지해야 한다. 한편 강제력이 있는 치료의 필요성, 자녀 곁에 반드시 부모가 있어야 하는 필요성, 자녀의 예상 가능한 치료 기간을 명시하는 세부적인 의료 증명서 한 부를 제출해야만 한다.

"부모가 곁에 있어야 하는 휴가" 명목으로 매달 결근 횟수(최대 22일)에 해당하는 매일수당이 달마다 지급된다. 매일 수당 액수는 커플에게 일당 39.58 유로, 혼자인 경우 47.02유로이다. 아이의 건강상태와 관련된 지출을 하고 있는 경우 몇몇 조건하에서 월간 101.22 유로의 보조금이 지급될 수 있다. 매일수당은 3년 한도로 310일 동안 지급될 수 있다. 한편, "아이 곁에 있어야 하는 부모의 매일 수당" 지급은 기간 내내 의료보험 수당과 노후보장 수당을 지급받는 권리를 보장해 준다.

(10) 개학수당(L' allocation de rentrée scolaire)

개학수당은 6세부터 18세까지 자녀의 학교 개학 준비를 위해 드는 비용을 보조해 주는 제도이다. 수급 조건으로 2007년 현재 1989년 9월 16일부터 2002년 1월 31일 사이에 출생한 6세부터 18세까지의 피부양자 아이를 한명 혹은 여러 명 두어야 한다. 개학 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피부양자 자녀수에 따라 정해진 소득 수준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개학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소득 조건은 아래와 같다.

표 6. 개학 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는 소득 조건

피부양자 아이수	소득 최대액수
1자녀	17,299유로
2자녀	21,291유로
3자녀	25,283유로
추가 한명 당	3,992유로

자료: 프랑스 가족수당금고(2007) "2007년 당신의 수당(Vos prestations 2007)"

개학수당은 2007년 개학 때 자녀 한 명당 272.57 유로이다. 개학 수당은 16~18세까지의 청소년을 제외하고 개학 며칠 전에 지급된다. 소득이 최대 액수보다 약간 높은 가정에 대해서는 감소된 수당이 지급될 수 있다.

소득신고를 제대로 해서 개학수당을 받을 권리가 있는 경우 본인이 다른 어떤 수속을 하지 않아도 가족수당금고가 16세 미만의 자녀를 위해 자동적으로 개학수당을 지급한다.

하지만 현재 가족수당금고의 수혜자가 아니거나 더 이상 혜택을 받을 수 없다면 해당 가족수당금고에 당해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이전에 연락을 취해야 한다. 16세부터 18세 까지의 청소년을 위해서는 취학 증명서류나 견습 증명서류에 따라 "개학연금"이 지급된다.

(11) 가족 수당(Les allocations familiales)

가족수당은 두 번째 자녀부터 지급되는 수당이다. 수급조건으로 20세 미만의 피부양자 자녀가 두 명 이상 있어야 한다. 가족수당 월 급여액은 가정 내 피부양자 자녀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다양하다: ① 2명: 119.13 유로, ② 3명: 271.75 유로, ③ 4명: 424.37 유로, ④ 1명 추가 당 152.63 유로 가산.

가족수당 액수는 아이들이 자라면 증액되는데 아이 연령이 11세가 되면 아이를 위해 생일 다음 달부터 기초 가족수당 액수에 월간 33.51 유로의 가산금을 받는다. 이 월간 가산금은 16세가 되는 다음날에 59.57유로로 상향조정된다.

가족수당은 둘째 자녀, 그 다음 셋째, 넷째의 출생 혹은 아이를 입양한 다음 달부터 지급된다. 피부양자 아이가 단 한 명만 있거나 단 한명도 없게 될 때 가족 수당은 이러한 상황변화가 있기 바로 전 달 말에 중지된다. 월간 75.33 유로의 도급 수당이 맏이가 20세가 된 세 자녀 이상의 가정에 1년 동안 지급된다. 두 자녀 가족의 맏이나 피부양자 자녀가 두 명만 남은 가정의 큰 애를 위해서는 어떤 가산금도 지불되지 않는다.

아이가 부모 각자의 집에 번갈아 거주할 경우 가족 수당은 부모 양쪽에 나누어 지급될 수 있다. 가족 수당은 신청할 필요가 없으며 새 아이가 생긴 사실을 가족수당금고에 알리면 두 번째 피부양자 자녀부터 자동적으로 가족수당이 지급된다. 가족수당은 다른 모든 수당과 병행하여 지급될 수 있다.

(12) 가족 보조금(Le complément familial)

가족 보조금은 최소 세 자녀가 있는 경우 막내

아이의 세 번째 생일 이후에 "기초수당" 이나 "어린아이를 위한 수당" 뒤에 지급된다. 수급 조건으로 3세 이상 21세 미만의 피부양자인 아이가 최소한 세 명 있어야 한다. 전년도 소득이 가정내 아이 수에 따라 정해진 소득 수준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혼자 사는 경우와 소득이 있는 커플이 함께 살며 각자 직업상의 소득이 실업수당, 질병수당과 같은 대체수당을 포함하지 않고 4,336 유로 이거나 그 이상을 벌어들인 경우 소득의 최대 액수는 더 높다.

표 7. 프랑스의 가족 보조금 소득 제한 조건

자녀수	한쪽만 소득활동을 하는 커플	편부모나 양쪽 모두 소득 활동을 하는 커플
3	26,731유로	32,700유로
4	31,186유로	37,155유로
추가 1명 당	4,455유로	4,455유로

자료: 프랑스 가족수당금고(2007) "2007년 당신의 수당(Vos prestations 2007)"

세 명 이상의 피부양자 아이가 있는 경우 매월 155.05 유로를 받게 되고 감소된 가족보조금을 받는 권리가 있다면 그보다 조금 덜 받게 된다. 가족보조금은 나이가 가장 어린 자녀의 세 번째 생일부터 지급된다. 피부양자 자녀가 3세 이상이고 세 명 이하 남게 되는 때부터 혹은 새로운 자녀를 위해 기초수당을 받는 때부터 지급은 끝난다. 가족보조금은 본인이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조건을 충족시키고 가족수당금고에 연간소득신고서를 보내는 경우 가족수당금고가 자동적으로 가족보조금을 지급한다.

(13) 편부모수당(L' allocation de parent isolé)

편부모수당은 적어도 한 명의 출생하였거나 혹은 출생 예정인 자녀와 혼자 살며 소득이 아주 적은 경우 최소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수급조건으로 임신 중이거나 적어도 한 명의 피부양자 자녀가 있어야 한다. 또한 배우자 사망이나 별거, 이혼 혹은 구류나 입원으로 인해 배우자나 동거인의 소득 없이 혼자 사는 경우이어야 한다. 최근 3개월 동안 월 평균 소득 액수가 편부모 수당의 최대 액수 이하이어야만 하며 이는 피부양자 자녀 수에 따라 달라진다. 새 직업활동을 하는 경우에도 편부모 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다.

편부모 수당은 모든 사람이 같은 액수를 받는 것이 아니며, 월 평균 소득과 편부모 수당 최대 액수 간의 차액을 받게 된다.

표 8. 편부모 수당의 월간 최대 액수

구분	편부모 수당 최대 액수
자녀없는 임신부	561.18유로
자녀 1명의 편부모	748.24유로
추가 자녀 1명 당	187.06유로

자료: 프랑스 가족수당금고(2007) "2007년 당신의 수당(Vos prestations 2007)"

이미 주택보조금의 혜택을 받거나 주택에 대한 어떤 지출도 하지 않는 경우(주택 소유주거나 무료 유숙자), 편부모 수당에서 주택 사정액이 공제 된다. 주택 사정액은 자녀가 없는 경우 52.90유로, 자녀 2인의 경우 105.81 유로, 자녀 3인의 경우 130.94 유로이다.

편부모 수당은 신청한 달부터 지급된다. 3개월 마다 해당 가족수당금고가 다음 3분기 편부모 수당에 대한 권리를 재검토하기 위해 소득 신고서를 보낸다. 가족수당금고는 연속 12개월간 혹은 가장 나이 어린 자녀의 세 번째 생일 전달까지 지급할 수 있다.

한편 편부모 수당에 대한 권리가 없거나 더 이상 권리가 없게 되는 경우 "사회적응최소소득"을 신청할 수 있다. 배우자와 다시 사는 경우 권리를 재검도 할 수 있도록 가족수당금고에 알려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가족수당금고가 초과 수령한 액수의 환급을 요구한다.

4. 프랑스 가족 수당 정책의 시사점

본 절에서는 앞서 고찰한 프랑스 가족 정책의 시사점을 몇 가지로 요약하면서 우리나라 아동양육 지원 정책에 주는 시사점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첫째, 프랑스 가족 수당 정책은 임신한 순간부터 부양자녀가 성인으로 독립할 때까지 지원하는 형태로 되어 있다. 비록 수혜 지급 대상이 일정 소득 수준이하의 여성에게 한정되어 있지만 임신한 여성에 한해 7개월간 자녀 출산을 위한 준비금으로서 출생 · 입양 수당을 지급한다. 자녀를 출생하고 난 후 역시 일정 소득 수준 이하의 부모에 한해 자녀가 3세 될 때 까지 기초수당을 지급하며,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가족수당을 자녀 연령 20세가 될 때까지 지급한다. 자녀가 성장함에 따라 자녀에 지출하는 비용은 점차 커지기 때문에 가족 수당은 자녀가 어릴 때만 지급하는 한시적인 성격이 아닌 자녀가 독립된 성인으로 성장할 때까지 지원을 계속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프랑스의 가족 수당 정책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자녀가 1명인 경우에는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의 가정에게만 수당을 지급하고,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만 보편적인 성격으로 소득 계층에 무관하게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것에서 볼 수 있다. 가족 수당 정책은 가족 혹은 아동의 복지 수준 향상을 위해 설계되어야 함이 마땅하지만 저출산고령화라는 사회 당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출산 유인을 위한 목적도 어느 정도 감안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취업 여성과 전업 주부간의 엄격한 구분을 두고 보육 서비스 지원을 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보육과 관련된 수당은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자녀를 보육 한다는 조건하에(needs-tested) 지급된다. 하지만 직업을 가진 여성이 가정에 남아 있으면서 자녀를 돌보는 댓가로 수당을 지급받을 경우, 보육시설이나 보육 도우미 이용에 대한 보조금을 받을 수 없다. 직장에 다니는 여성이 직업 활동을 잠시 그만 두고 자녀를 돌보는 경우에 한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보조금은 모두 모성 휴가, 부성 휴가, 입양 휴가, 병가와 중복되어 사용할 수 없도록 휴가가 끝나는 날부터 지급되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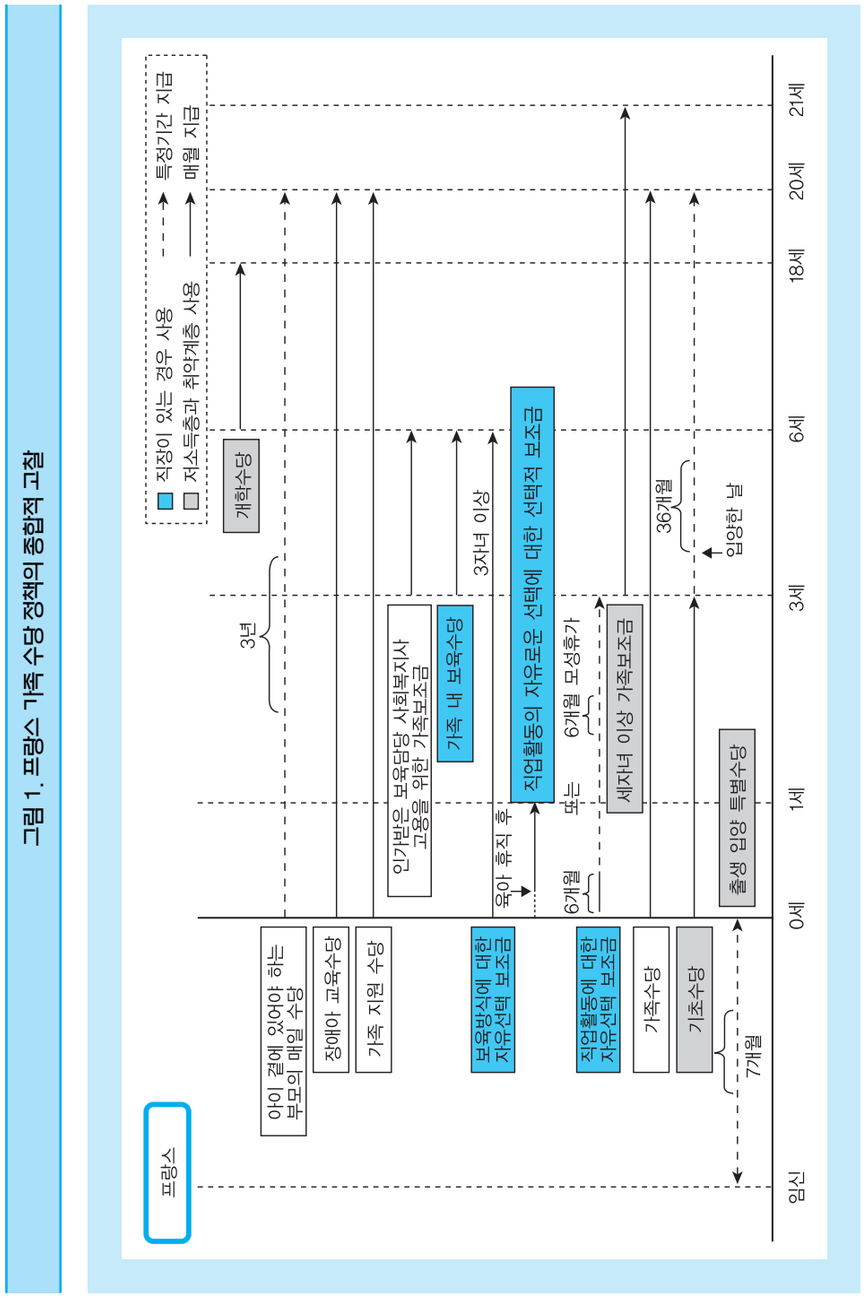

보육 서비스 지원 정책을 설계할 때 여성의 취업 여부를 고려하여 보육 서비스 지원에 있어 중복성이 없도록 고려함이 필요할 것이다.

넷째, 프랑스의 가족지원정책은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보장적인 성격이 강하다. 자녀가 아프거나 장애자인 경우 지급되는 수당이 있으며 고아를 위한 수당도 마련되어 있다. 또한 저소득층 자녀가 개학 준비를 하는데 지원을 해주는 "개학수당"이 있다.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의 경우 대부분 자녀가 독립적인 성인으로 성장할 때까지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또한 취약계층에 대한 수당 정책은 별다른 중복 규제 없이 다른 수당과 함께 지급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아동 양육지원 정책을 설계함에 있어 이러한 취약계층에 대한 특별한 고려가 필요할 것이다. GSST